

#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

제 1 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대한육상연맹(이하 "연맹"이라 한다)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경기력향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(목적) 위원회는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기술을 연구하여 경기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3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표선수의 경기력향상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
2. 국제대회대비 기술훈련계획수립 및 추진 사항
3. 과학적인 훈련방법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사항
4. 국제대회 및 기술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
5. 기술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6.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 관한 사항
7. 외국코치 초빙 관련 사항
8.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

제 4 조(조직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트랙, 필드, 마라톤 경보 기술위원회로 구분 또는 일부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1. 위원장 1인
  2. 부위원장 1~2인
  3. 위원 9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사무처 담당 직원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위원장은 회장이 가급적 이사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위촉 및 임명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

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

-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연맹 및 육상경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9 조(회의)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.
-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작성, 회의록작성보관, 회무보고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결과를 사무처의 소정절차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재가를 득함 또는 필요시 이사회 의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0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1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0.10.14.)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6.6.21)로부터 시행한다.